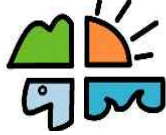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166호 2018년 10월 1일(월)

훈 령

○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0 월 1 일

속초시장

(직인)

속초시 훈령 제716호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에 접수된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도시철도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

업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민원관련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법률전문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처리주무부서 장이 한다”를 “처리주무부서 장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